

[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5. 11. 1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5. 11. 21.
- 라. 의안번호 : 제2005 ~ 67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거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5년 7월 1일 개정되어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및 당연직 위원을 추가 지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제명 “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”를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함.
-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위원중 지역개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변경하고, 산림환경과장, 재난안전관리과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추가 지정함.(안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의 변경과 재난관리와 연관이 있는 실과소장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재난과 관련이 많은 4명의 실과소장을 추가한 것은 재난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치라 판단되나, 재난발생시 이재민과 부상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및 보건소장을 추가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.
- 동 개정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수정안 요지 :

제2조의 구성에 “행정과장, 사회복지과장, 보건소장”을 직제순에 따라 추가함

7. 심사 결과 : “수정안 가결”

재난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군청 실과장을 직제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산림환경과장, 재난안전관리과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4명의 실과소장을 추가하였으나, 인력관리, 이재민 및 부상자 처리와 관련이 있는 “행정과장, 사회복지과장, 보건소장”이 누락되어 직제 순서에 따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음.

8. 소수의견 요지 : “생략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생략”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</p> <p>1. - 7(생략)</p> <p>8. 건설과장</p> <p>9. 지역개발과장</p> <p>10.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장</p> <p>11. KT진주시사 거창지점장</p> <p>12. 한국전기안전공사 거창지점장</p>	<p>제2조(구성) ①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- 7(생략)</p> <p>8. 산림환경과장</p> <p>9. 건설과장</p> <p>10. 도시건축과장</p> <p>11. 재난안전관리과장</p> <p>12. 농업기술센터소장</p> <p>13. 상하수도사업소장</p> <p>14.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장</p> <p>15. KT진주시사 거창지점장</p> <p>16. 한국전기안전공사 거창지사장</p> <p>..</p>	<p>제2조(구성)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- 6(생략)</p> <p>7. 행정과장</p> <p>8. 경제과장</p> <p>9. 사회복지과장</p> <p>10. 산림환경과장</p> <p>11. 건설과장</p> <p>12. 도시건축과장</p> <p>13. 재난안전관리과장</p> <p>14. 농업기술센터소장</p> <p>15. 보건소장</p> <p>16. 상하수도사업소장</p> <p>17.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장</p> <p>18. KT진주시사 거창지점장</p> <p>19. 한국전기안전공사 거창지사장</p>